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4025호

2024. 11. 29.(금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 등

[규 칙]

제4672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2

[예 규]

제739호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일부개정예규 5

자치법규 등

[규 칙]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672호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4년 11월 29일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의정담당관·언론홍보실장·의사담당관·법제담당관·재정분석담당관·정책지원담당관·인사담당관을 두며”를 “의정담당관·언론홍보실장·의사담당관·법제담당관·재정분석담당관·인사담당관·현장민원담당관을 두며”로 “언론홍보실장 및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”를 “의정담당관·언론홍보실장·의사담당관·법제담당관·재정분석담당관·인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현장민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제담당관·정책지원담당관”을 “법제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4호 중 “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”을 “교섭단체 운영 행정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5호,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8호를 제15호로 한다.

제6조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18. 전산실·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19.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20. 의원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

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시의회 인턴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9조를 삭제하고, 제10조를 제9조로 하며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현장민원담당관) 현장민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민원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3. 각종 민원의 접수·처리 및 이첩에 관한 사항
4. U-신문고(의회신문고) 등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5. 민원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
6. 민원처리결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7. 민원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
8. 기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

제1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8조의2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— 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 —

1. 개정이유

현장중심 문제 해결력 및 시민 중심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및 정책지원 담당관 폐지 등 조직개편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현장민원담당관 신설(제10조)

나. 정책지원담당관 폐지 및 기타 사무 이관·정비(제3조~제9조)

다. 정책지원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(제3조제2항)

[예 규]

◆ 서울특별시에규 제739호

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일부개정예규

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4년 11월 29일

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”을 “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인권보호수사준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민생사법경찰단의”를 “민생사법경찰국 소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수사관”을 “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(이하 “수사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민생사법경찰단장”을 “민생사법경찰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합리적”을 “수사관은 합리적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민생사법경찰단장”을 “민생사법경찰국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민생사법경찰단”을 “민생사법경찰국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민생사법경찰단장”을 “민생사법경찰국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긴급체포에 관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「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」 제57조에 따른다.

제22조제2항제1호 중 “검토한다”를 “검토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고려하여야 한다”를 “고려할 것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않는다”를 “않을 것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호 중 “확인해야 한다”를 “확인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수사관”으로, “주어야 한다”를 “줄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확인해야 한다”를 “확인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선택하여야 한다”를 “선택하도록 노력할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유의한다”를 “유의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

“조치하여야 한다”를 “조치할 것”으로 한다.

제26조 중 “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”를 “사법경찰관리에 지명수배 해제 요청을 하여야”로 한다.

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“설명해야 한다”를 “설명할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 중 “받아야 한다”를 “받을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4호 중 “보장해야 한다”를 “보장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5호 중 “유의한다”를 “유의할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6호 중 “해야 한다”를 “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7호 중 “돌려준다”를 “돌려줄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8호 중 “교부한다”를 “교부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9호 중 “노력한다”를 “노력할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0호 중 “교부해야 한다”를 “교부할 것”으로 한다.

3. 압수·수색은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할 것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야간에 할 수 있다.

제29조 본문 중 “수사관이”를 “수사관은”으로, “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·수색하는”을 “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”으로, “압수하여야”를 “제출받아야”로 한다.

제31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해야 한다”를 각각 “할 것”으로 한다.

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피의자”를 “수사관은 「형사소송법」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수사관이 「형사소송법」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”를 “조사”로, “고려해야 한다”를 “고려할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첨부한다”를 “첨부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노력해야 한다”를 “노력할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알려주어야 한다”를 “알릴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한다”를 “할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전단 중 “않는다”를 “않을 것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민생사법경찰단장”을 “민생사법경찰국장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1호 중 “않는다”를 “않을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설명해야 한다”를 “설명할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해서는 안 된다”를 “하지 않을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거부해서는 안 된다”를 “거부하지 않을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한다”를 “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놓아두지 않는다”를 “두지 않을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“허용해야 한다”를 “허용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본문 중 “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”을 “조사 시”로, “이상 조사 또는”을 “이상”으로, “한다”를 “할 것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1호 중 “하여야 한다” 를 “할 것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소환한다” 를 “소환할 것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조사하여야 한다” 를 “조사할 것” 으로 한다.

제44조제1항 본문 중 “위해 조사, 신문,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” 를 “위해” 로, “6시까지 사이에 조사(이하 “심야조사 “라 한다)를” 을 “6시까지의 조사, 신문, 면담 등(이하 “심야조사 “라 한다)을” 로 한다.

제46조제4항 중 “제1항 내지” 를 “제1항부터” 로 한다.

제49조를 삭제한다.

제52조제1호 중 “고려한다” 를 “고려할 것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한다” 를 “할 것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취한다” 를 “취할 것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지양한다” 를 “지양할 것” 으로 한다.

제56조제3항 중 “민생사법경찰단” 을 “민생사법경찰국” 으로 한다.

제63조의 제목 “(사건의 송치)” 를 “(사건의 송치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수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에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,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 등을 살펴 역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
- ② 수사관은 수사 결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준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- 2024. 7. 1.자 서울특별시 실·국 명칭변경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(장)에서 민생사법경찰국(장)으로 수정
- 자치법규 조항의 구성 방법에 대한 법제처 지침을 준용하여 조항 ‘호’에서 “~할 것” 등과 같은 표현 방식으로 수정

2. 주요내용

- 가. 민생사법경찰단(장)에서 민생사법경찰국(장)으로 명칭 변경
- 나. 호에서 “~할 것” 등과 같은 표현 방식으로 변경
- 다. 자구 수정 및 우리말 순화어 사용
- 라. 기타 상위법에 맞게 내용 일부 수정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